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65

발의연월일: 2021. 10. 26.

발 의 자:이상헌·강선우·김교흥

김병기・김진표・도종환

류호정 • 민홍철 • 송재호

유정주 • 이병훈 • 전용기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특정한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할 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 구단은 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스포츠 선수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 반면 프로 게임 시장에 관한 산업적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상황임. 실제로 몇 년 전 많은 국내 선수들이 연봉과 기타 산업적 인프라 부실을 이유로 해외로 이적했던 바 있음.

이에 현행 기업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이스포츠 구단을 포함시킴으로써 프로 게임 시장에서의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2의 제목 중 "기업의 운동경기부"를 "기업 운동경기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을 "운동경기부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구단(이하 이조에서 "운동경기부등"이라 한다)을"로, "운동경기부의"를 "운동경기부등"이라 한다)을"로, "운동경기부의"를 "운동경기부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의 이스포츠 종목 구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이스포츠 종목 구단을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행 개 혂 정 아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제104조의22(기업 운동경기부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u>운동경기부</u> 및 「이 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 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구 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 등"이라 한다)을-----운 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동경기부등의-----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 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또 -----운동경기부등 는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 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운 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 동경기부등 또는 장애인운동경 기부-----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 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